

하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9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년 7월 31일

발의자 : 정혜영 의원

1. 제안이유

운영비 지원 지양 등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명확히 하고, 현행 제도 운영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「하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」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 지양 문구를 삭제(안 제4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- 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- 다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- 라. 기타사항 : 해당없음
- 마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6. 8. 3. ~ 8. 7.
- 제출방법 : 방문(주말·공휴일 제외), 우편, 팩스, 홈페이지
- 기재내용 : 붙임 서식 참조
- 제출기관 : 하남시의회(의회운영 전문위원실)
 - 주 소 :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(신장동, 하남시의회)
 - 전 화 : 031-790-6510
 - F A X : 031-790-6529
 - 홈페이지 : <https://council.hanam.go.kr/> (의안정보 → 조례안 예고)

하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은 지양하고, 보조되는”을 “보조되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보조금의 지원) ① (생 략) ② <u>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은 지양</u> <u>하고,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</u> <u>적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.</u>	제4조(보조금의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보조되는</u> ----- ----- -----.